

2007년 베트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장근섭 (주호치민총영사관 노무관)

■ 개 황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을 선언한 지 20주년이 되었던 작년 8.2%의 경제성장, 사상 최대의 외자유치(102억달러), 제10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50대의 뉴리더로 세대교체 단행, 그동안 숙원이던 WTO 가입¹⁾,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인구가 73%를 차지하고 1차산업의 고용비중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은행이용률은 전국민의 10% 미만이나 이동전화 가입자는 1,6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어 흔히 베트남을 과거와 미래가 혼재하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책 또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2006년 이전에는 노동관계법이 오로지 「노동법」 하나에 불과했었고 비로소 작년에 사회보험법,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지금 베트남이 갖고 있는 노동문제 또한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기업에 더 많은, 더 우수한 노동력을 공급할 것인가, 노사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촌향도에 따른 도시화의 그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 베트남 정부의 주된 정

1) 베트남은 2006년 12월 12일 국회 비준후 1개월 후인 2007년 1월 11일부터 정식으로 150번째 WTO 회원국 가입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6년 12월 9일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베트남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 부여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책과제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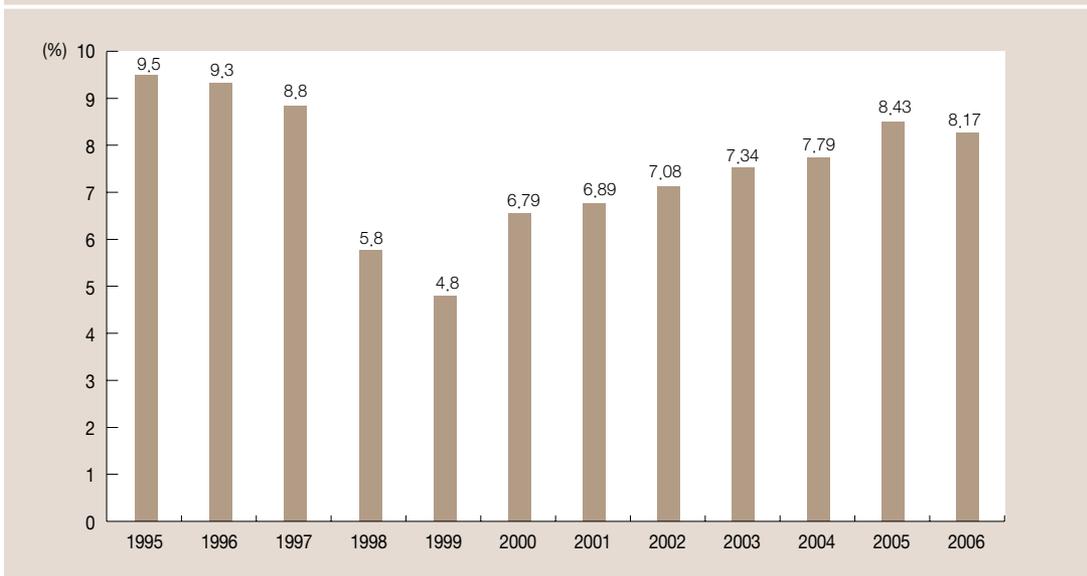
따라서 이 글의 방향 역시 먼저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에 따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2007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베트남 경제동향

베트남 경제는 지금 한 마디로 “뜨겁다.” 작년초 베트남의 증권시장규모는 연초 4.6억달러(304 포인트)에 불과하였으나, 연말에는 87억달러(734 포인트)로 급성장하였다. 베트남은 2000년 이후 7~8%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2005년 8.43% 성장에 이어 작년에는 GDP 성장률이 8.17% 성장하여 1인당 GDP는 729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12월 18일까지 76억 달러(전년대비 90% 증가) 규모의 외국인 신규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기존 투자의 증액분을 포함하면 무려 102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누계 기준으로 보면 총 6,813건 60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주요 투자국은

[그림 1]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홍콩 순이다.

베트남 경제는 2007년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도 경제성장률을 8.2~8.5%로 정하고 1인당 GDP 820달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1〉 베트남의 연도별 경제지수 및 2007년 주요 경제목표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1인당 GDP(US\$)		483	553	640	729	820
경제성장률(%)		7.34	7.79	8.43	8.17	8.2~8.5
산업 구조	1차산업(%)	22.5	21.8	21.0	20.4	19.5
	2차산업(%)	39.5	40.2	41.0	41.5	42
	3차산업(%)	38.0	38.0	38.0	38.1	38.5
연간 인플레이션(%)		-	7.7	8.3	7.5	GDP 성장률 보다 낮게
실업률(%)		5.8	5.6	5.3	4.4	
수출(US\$억)		201.8	260.0	324.4	396.1	475.4
수입(US\$억)		252.3	315.2	369.8	444.1	491

■ 베트남 노동시장 전망

고용 및 일자리 창출

기록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6년 실업률은 4.4% 수준으로 2005년 5.3%에 비하여 대폭 낮아졌다. 특히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부 고지대, 서북지방의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곳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곳 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 주변으로 노동력이 대거 이동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다. 고도의 경제성장, 노동력 해외수출 등에 힘입어 2006년 신규 일자리 창출은 160만 명을 달성하였다.

베트남의 총인구는 2006년 기준 84백만 명으로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종전(1975년) 이후 출생자(30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는 대단히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이 베트남의 투자매력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취업인구는 43백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 70만 명(0.8%)이 종사하고 있다.

〈표 2〉 베트남의 지역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	6.4	6.3	6.0	5.8	5.6	5.3	4.4
Red River Delta	7.3	7.1	6.6	6.4	6.0	5.6	5.6
North East	6.5	6.7	6.1	5.9	5.5	5.1	3.8
North West	6.0	5.6	5.1	5.2	5.3	4.9	3.0
North Central Coast	6.9	6.7	5.8	5.5	5.4	5.0	5.2
South Central Coast	6.3	6.2	5.5	5.5	5.7	5.5	4.5
Central Highlands	5.2	5.6	4.9	4.4	4.5	4.2	1.8
South East	6.2	5.9	6.3	6.1	5.9	5.6	4.6
Mekong River Delta	6.2	6.1	5.5	5.3	5.0	4.9	3.5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저개발국가임이 여실히 나타난다. 아직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취업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25%, 제조업에 19%가 종사하고 있다.

〈표 3〉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 추이

(단위 : 천 명)

	2000		2002		2004		2005		2006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총 계	37,610	100%	39,508	100%	41,586	100%	42,543	100%	43,436	100%
1차산업	24,481	65.1%	24,456	61.9%	24,431	58.7%	24,257	57.0%	24,172	56%
2차산업	4,930	13.1%	6,085	15.4%	7,217	17.4%	7,636	17.9%	8,297	19%
3차산업	8,199	21.8%	8,967	22.7%	9,129	22.0%	10,816	25.4%	10,967	25%

베트남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60만 개(국내 152만, 해외취업 8만)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5.2%이다. 고용구조는 1차산업 54%, 2차산업 19.5%, 3차산업 26.5%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성장 목표 8.5%를 달성하고 283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동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의 양적 공급 확대

베트남의 노동력이 전체적으로는 풍부한 것이 사실이지만 호치민시 인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남주지역 소재 빈증성 공단관리사무소에 의하면



2007년 중 약 2만 명의 근로자가 필요한데 특히 많은 근로자가 필요한 업종은 봉제, 목제가공, 전기, 전자 등이다. 최근 투자승인을 받고 빈증성에 공장을 신축중인 아국투자기업 금호타이어 역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인력부족 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73%에 이르는 농촌 노동력을 여하히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지역 인구나 낙후된 중부지방 인구가 조만간 남부 호치민 인근, 북부 하노이 인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아울러 인구구성상 노동력이 매우 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 노동력 공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²⁾ 인력이동에 다소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베트남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 3〉 도농간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1990	1993	1996	1999	2002	2006
총인구(%)	65,906(100)	69,768(100)	73,200(100)	76,618(100)	79,727(100)	84,110(100)
농촌지역(%)	53,026(80.5)	55,807(80.0)	57,780(78.9)	58,580(76.5)	59,705(74.9)	61,290(72.9)
도시지역(%)	12,880(19.5)	13,961(20.0)	15,420(21.1)	18,038(23.5)	20,022(25.1)	22,820(27.1)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제고

베트남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노동력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200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근로자중 직업훈련을 이수한 근로자는 31.9%로서 전년에 비해 6.6%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5년 현재 훈련이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9.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훈련의 개념, 법규, 시설, 통계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2) 베트남은 엄격한 호적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적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 취득 등이 불가능기 때문에, 상당한 뇌물을 주고 도시호적을 취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베트남도시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거주증을 가진 사람 중 하노이에 거주하는 10만~12만 명, 호치민에 거주하는 30만~35만 명이 호적등록을 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2006년 베트남 정부는 직업훈련에 2,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교육제도³⁾와는 별도로 전국에 1,900개의 각급 직업훈련기관이 있으며, 이 중 직업전문대학 20개, 중·초급직업훈련학교 243개 등 263개가 운영되고 있다. 작년 직업훈련 이수자는 134만 명이며 금년 1월 현재 50만 명이 재학중이다. 올해 직업훈련 목표는 직업전문대학 29,500명, 중급직업학교 275,500명, 초급직업학교 110만 명을 포함 140만 5천 명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1967년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양질의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였듯이 베트남도 2006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직업훈련법」을 통과시켰다(2007년 6월 1일 시행). 동 법률은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주체, 운영의 자율권, 직업훈련기금 조성 등에 대해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은 베트남 민간주체는 물론 외국자본에 문호를 확대하였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훈련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으로부터 직업훈련기금을 각출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대해 세금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직업훈련을 담당할 부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동 법률은 노동보훈사회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2006년 초에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주관 부처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벌어졌다. 교육부 쪽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존 직업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직업훈련 역시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노동보훈사회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수요를 더욱 반영하기 쉽고 유연성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동 법에는 수상실 산하에 직업훈련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위규정이 나와 보아야 자세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임금 전망

2006년 7월 베트남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35달러(2005년 기준,

3) 베트남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5)-중학교(4)-고등학교(3)-대학(4) 또는 전문대학(2)를 기본으로, 중·고등학교 졸업후 진학하는 전문학교(Trung Hoc Chuyen Nghiep)(1~4년)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훈련은 각 부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각각 기관을 설립,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보훈사회부와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 직업학교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금년부터 노동부 직업훈련기관들이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은 120달러이며, 대졸 근로자의 평균수입은 180달러 수준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임금은 매년 10% 수준 상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미숙련 일반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50~60달러 수준으로 저렴하다.

〈표 4〉 베트남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2006년)

(단위 : 베트남 동, 월급여)

학력	평균임금	평균수입
대졸 이상	2,488,000(\$156)	2,876,000(\$180)
3년제 대학	1,748,000(\$109)	2,027,000(\$127)
전문대	1,427,000(\$89)	1,549,000(\$97)
전문학교(기본교육)	1,339,000(\$84)	1,692,000(\$106)
기술직 근로자	1,325,000(\$83)	1,575,000(\$98)
초보 근로자	1,026,000(\$64)	1,215,000(\$76)

다만 관리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매우 높다. 인구구조상 경험있는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그동안 훈련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면서 고급인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이들의 몸값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JETRO(일본 무역관) 조사에 의하면 현재 호치민市 주재 기업 내 팀장급 관리자의 임금은 685달러/월(인도네시아 640달러, 태국 584달러)로서 대련이나 심천(중국),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직무수준별 임금수준 비교

(단위 : 베트남 동, 월급여)

기업 종류	관리직	전문직 근로자	현장 근로자
국영기업	4,332,000(\$271)	1,514,000(\$95)	1,418,000(\$89)
FDI 기업	12,000,000(\$750)	2,232,000(\$140)	1,391,000(\$87)
민영기업	3,069,000(\$192)	1,422,000(\$89)	1,164,000(\$73)

베트남의 최저임금제도⁴⁾는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국내기업, 외투기업(FIE) 등 2가지로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원적인 시스템은 WTO 체제에 맞지 않는 외투기업, 국내기업간 차별적 대우라는

4)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06년 4월호에 게재된 필자의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 동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6〉 베트남 최저임금 현황

적용 대상	내 용	적용일	비 고
외투기업	-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각 군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 : 월 87만동(미화 55달러 상당, 기존 62만6천동) -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각 현, 하이퐁시, 비엔호아시, 붕따우시 등에 위치한 기업 : 79만동(미화 50달러 상당, 기존 55만 6천동) - 그의 지역에 위치한 기업: 71만동(미화 45달러 상당, 기존 48만 7천동) - 직업훈련을 이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기 임금보다 7% 높은 최저임금 적용	2006. 2. 1	1999년 이후 6년 만에 40% 인상
베트남 국내기업	- 450,000 동/월로 인상(기존의 35만 동에서 45만 동으로 28.6% 인상)	2006. 10. 1	

점이다. 국내외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최저임금을 일원화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 최저임금 통합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국내기업의 최저임금을 금년에도 20~25% 수준을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등에 있어 여러 준거로 사용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베트남 정부는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 동향

베트남 노사관계는 매우 안정적이다. 진정한 의미의 노사관계도 아직 형성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와는 달리 베트남에는 대결적 노사문화가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조도 기업경영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노동조합은 국가통치조직의 일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⁵⁾

현행 노동법이 시행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합법 파업은 단 한 건도 없다. 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노조가 파업을 이끌 능력이 없고,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20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복잡한 절차

5) 노동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노총에 해당되는 전국조직이지만 헌법적 조직이며, 국회에 법안 제출권이 있고 의장은 당 중앙위원으로서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다.



차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모든 파업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는 “Wild Cat Strike”이며,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하는 수준이다. 작년초에 파업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7〉 연도별 파업발생 현황

	파업건수	국영 기업		FDI 기업		베트남 국내기업	
		건수	%	건수	%	건수	%
1995	60	11	18.3	28	46.7	21	35
1996	59	6	10.2	39	66.1	14	23.7
1997	59	10	16.9	35	59.4	14	23.7
1998	62	11	17.7	30	48.4	21	33.8
1999	67	4	6.0	42	62.7	21	31.3
2000	71	15	21.1	39	54.9	17	23.9
2001	89	9	10.1	54	60.7	26	29.2
2002	100	5	5.0	66	66.0	29	29.0
2003	139	3	2.2	101	72.7	35	25.1
2004	125	2	1.6	93	74.4	30	24.0
2005	147	8	5.5	100	68.0	39	26.5
2006.10	306	3	1.0	227	74.2	76	24.8
총계	1284	87	6.8	854	66.5	343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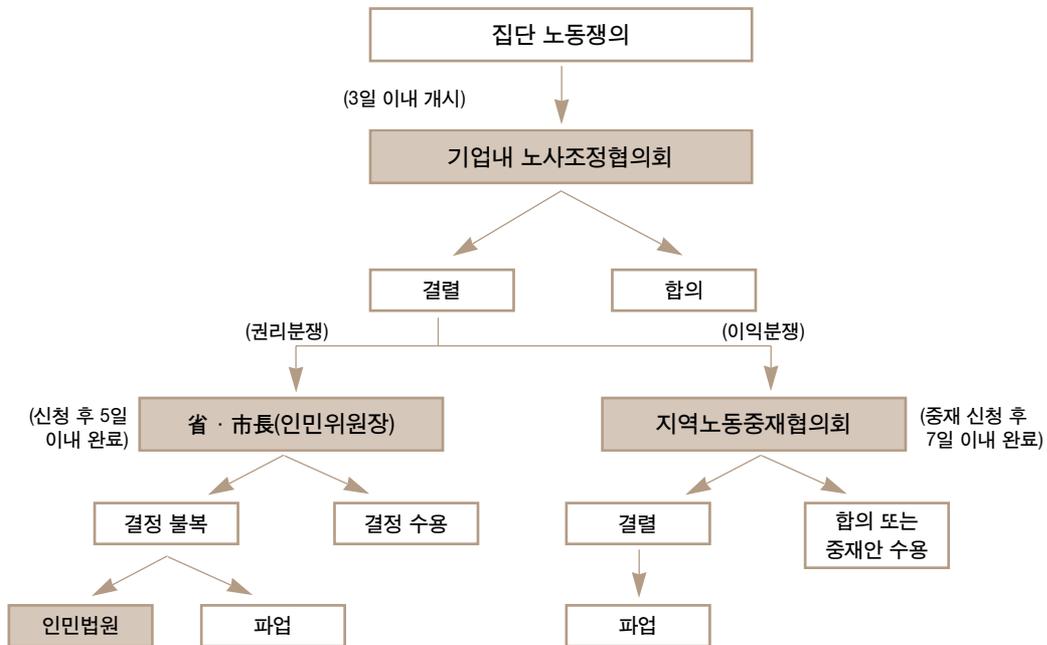
노동법에 정해진 분쟁해결절차가 있으나 파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동 절차에 의거 처리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단위 노동연맹,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투자기획부 직원 등 다수의 관계직원이 현장에 출두, 사건을 조사하여 적절히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사분쟁 관련 노동법 개정

파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2006년 5월 상당기간의 논의 끝에 노동법 제14장(노사분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의 골격은 노동분쟁을 권리

분쟁과 이익분쟁⁶⁾으로 나누고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파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파업의 90%가 권리에 관한 분쟁인 현실을 도외시하는 발상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를 징벌하는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⁷⁾

2006년 6월 국회는 노동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노동보훈사회부



〈그림 2〉 개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절차

6) ‘권리분쟁’이라 함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구제 등이 해당되며, ‘이익분쟁’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체결 등이 해당된다.

7) 정부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서 특히 ILO 아시아태평양사무소에서 노사관계 전문가로 일하고 있던 이창희 박사가 개정안 작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권리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하고,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파업을 인정하자는 것은 노동법 원리상 맞으나 베트남 현실과 다소 괴리되는 면이 있었다고 본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드디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법률은 권리분쟁의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성·시 노동보훈사회국의 적극 개입의무를 명시하고(법 제159조), 분쟁해결의 두 번째 단계에 성·시 인민위원장⁸⁾이 분쟁에 대한 결정(다만 당사자는 불복할 수 있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령상 근거 없이 임시조직처럼 운영되던 분쟁해결절차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다만 현실적으로는 동 법개정으로 인해 현장 노사관계가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노사관계에 있어 핵심은 현장노조가 얼마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 법상으로 노동조합만이 파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파업관련 조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베트남으로서는 당분간 현재 여건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맺음말

결론적으로 2007년 베트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노동력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별 노동력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베트남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아국기업은 노동력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입지 선정, 사업규모 확정, 임금수준 책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베트남 정부 역시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을 펼쳐 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금년중 작년에 통과시켰던 개정 노동법, 사회보험법, 직업훈련법에 대한 하위규정 제정 등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를 벤치마킹한 노사정 3자 대화기구 설치, 기술자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등 노동법 체계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KLI**

8) 베트남에는 64개 성·시가 있으며, 성·시의 행정조직으로 '인민위원회'가 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우리나라의 도지사, 시장에 해당한다.